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4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17.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향상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4호)

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방법 규정 신설(안 제8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없음[복지지원과-37920(2023. 9. 27.)]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498호

가) 예고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안 제5조)
 -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월 60리터 지원 신설
 - 지원 신설에 따라 조문 내용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격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함.
 -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안 제8조)
 - 안 제5조와 연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방법(상·하반기 연 2회)을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1. 28. 원안가결